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, 수탁관리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
- 사용료 반환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, 일부내용 중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한 자구를 수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 사유 및 수탁 대상 수정 (안 제5조제1항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손해보험 의무가입 조항 삭제(안 제8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 명시(안 제16조제2항)
- 사용료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8조제2항)
 - (1) “월 사용료” → “총 사용료”
 - (2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할 때 :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
-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맞춤법 등 수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(1) 「민법」
 - (2)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 - (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, 개정된 사항 반영으로,

-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토록 하고, 수탁관리자의 손해 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
-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